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
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56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기본원칙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 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라. 문화유산보호활동 지원 (안 제9조)
- 마. 문화유산교육의 진흥 (안 제10조)
- 바. 문화유산돌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- 사. 재정지원과 표창 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2조, 제13조, 제14조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0조, 제14조,
제22조의2, 제83조의3
- 나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금천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, 기본원칙 (안 제1조 ~ 안 제3조)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라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보호 정책의 원칙을 명시함

2)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(안 제7조 ~ 안 제8조)

○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

○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유산의 현황,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기록 작성을 근거함

3) 문화유산보호활동 지원 (안 제9조)

4) 문화유산교육의 진흥 (안 제10조)

○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, 교육자료 개발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을 마련함

5) 문화유산돌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함

6) 재정지원과 표창 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
다. 검토의견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‘문화재’라는 명칭을 ‘유산’으로 통칭은 ‘국가유산’으로 변경함

○ 국가유산 체계 전환 및 명칭 변경

현 행			변 경		
문화재 「문화재 보호법」	유형문화재		국가유산 「국가유산 기본법」	문화유산 「문화유산법」 (개정)	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(사적지 등)
	민속문화재			자연유산 「자연유산법」 (제정)	명승, 천연기념물 등
	기념물	사적지 등	무형유산 「무형유산법」 (개정)	전통공연, 공예 등	
		명승, 천연기념물 등			
무형문화재(전통공연, 공예 등)					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금천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가유산기본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409호, 2023. 5. 16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산”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2. “문화유산”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,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
3. “자연유산”이란 동물·식물·지형·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

제13조(국가유산의 지정·등록)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·도지정유산 또는 시·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·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.

제14조(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2. 14.] [법률 제20286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

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제10조(문화유산 기초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,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조사·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[제목개정 2023. 8. 8.]

제14조(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·홍보 실시) ① 문화재청장과 시·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, 재난 및 도난(이하 “화재등”이라 한다)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[전문개정 2017. 3. 21.]

제22조의2(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

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
2.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
3.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
5.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9. 11. 26.][제목개정 2023. 8. 8.]

제80조의3(문화유산돌봄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(이하 “문화유산돌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지정문화유산
2. 등록문화유산
3. 임시지정문화유산
4. 그 밖에 역사적·문화적·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
2.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·예방적 관리
3.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
4.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
5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
6.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[본조신설 2020. 6. 9.][제목개정 2023. 8. 8.]